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 손해배상(자)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주장사실 가운데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과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 2. 과실상계의 주장

원고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시 과속운전을 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의 손해발생과 손해범위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부분은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채무의 부존재
 - 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기는 상해가 아니라 단순 좌측 팔골절상에 불과하였습니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치료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의 전부인 치료비 전액 금 ○○○원 및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함으로

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추후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원고가 주장하고 사고발생 경위,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 정입니다)

4. 결 어

피고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 0. 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및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
	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
┃ 답변서의	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제 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
	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
	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
	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
	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
	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
	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
	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
	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기 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
	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 1. 24. 2001다
	2129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
	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
	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
	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임(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